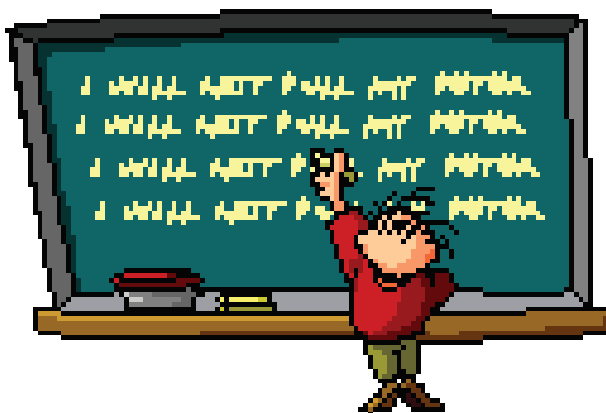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계속 정확을 당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Protection & Advocacy, Inc.

3580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427.8747

팩스: 213.427.8767

TTY: 800.727.4546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계속 정학을 당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제 아들은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합니다. 교사들은 모두 제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또한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들을 교장실로 보냅니다. 제 아들은 이번 학년도에 몇 번 정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제 아들을 더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교사들도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면 퇴학을 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전학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 몹시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면 자녀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라도 정학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모든 학생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으나,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연속적 또는 누적적으로 며칠 동안 정학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정학 처분을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특정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배워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조정에 대한 주법과 연방법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행동 문제를 겪고 있거나 정학 처분을 받은 자녀의 권리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간행물에서 다루는 주제:

- A. 정학
- B. 적극적인 행동 조정
- C. 최소 제한 환경 및 배치

*** 학군이 자녀에 대해 퇴학 처분을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행동에 관한 “증상 결정” 또는 “긴급” IEP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퇴학에 대한 저희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를 참조하십시오. ***

A. 정학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도 정학에 대해서는 보통 장애가 없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¹(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나 한 학년도에 누적할 수 있는 정학 기간과 정학 일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장애 학생에 대해 학년도 당 20일의 누적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² 그러나, 특수교육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나 법원 또는 심리 담당관의 명령 없이는 보통 연속된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받거나 배치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³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서는 증상 결정 심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된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의 제공을 중지해서는 안됩니다.⁴

학교나 학군의 직원은 특수교육 학생을 정학 기간 동안 임시로 현재의 배치에서 다른 배치(보통 “임시 대체 환경(interim alternative setting)”)이라고 함)로 이동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배치를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⁵ 또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서도 한 번의 정학 기간이 연속된 10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고 학생의 행동이 배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 한, 한 학년도에 발생한 여러 건의 교칙 위반에 대해 총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⁶

그러나, 특수교육 학생은 한 학년도의 누적 정학 일수가 10일을 초과한 후에는 정학 처분이 임시 대체 배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해야 합니다.⁷ 학군은 학생이 일반 교과과정에서 적절하게 진도를 따라가고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학군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⁸ 이것은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현재의 배치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한 학년도의 누적 정학 일수가 11일째 되는 날부터 학군이 그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 최대 연속된 10 수업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등교를 금지하거나 다른 배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같은 학생이 말썽을 일으키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 다시 최대 연속된 10 수업일 동안 추가로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학 기간은 한 학년도에 총 10 수업일을 초과하므로 학군은 학생에

게 임시 대안 환경에서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한 건의 위반에 대해 연속된 11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 이러한 정학은 자동으로 배치 변경으로 간주되고, 퇴학이 고려되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⁹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정학 기간은 장애와 상관없이 한 학년도에 총 20일로 제한됩니다(새 학교로 전학하여 적응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 년에 총 30일의 정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¹⁰

학군이 FAPE 제공 책임의 일부로 임시 대체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연속된 10일의 정학 제한 기간 또는 한 학년도에 총 20일의 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학년도 당 총 10 수업일이 넘는 일련의 정학 처분이 행동의 패턴을 나타내는 특정한 경우에는 IEP 회의와 학부모의 동의없이 배치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각 배치 이동 기간의 길이, 학생을 이동시킨 총 시간수, 이동 배치 사이의 근접성, 일련의 정학 처분을 받은 자녀 행동의 유사성과 같은 요소들이 정학의 패턴이 불법적인 배치 변경이나 퇴학처럼 보이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학이 패턴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정학은 배치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¹¹ 정학이 배치 변경으로 간주되는 경우, IEP 팀은 증상 결정 회의를 열어야 하고, 배치 변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¹²

예를 들어, 학기가 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녀가 이미 총 12 수업일의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부모는 모든 정학의 시간적 근접성이 패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유사한 행동 문제 또는 매우 유사한 행동 유형으로 인해 모든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패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에 대한 정학은 IEP 회의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배치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총 12 수업일 동안의 정학 또는 배치 이동은 배치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고, 퇴학이 고려되고 있는 장애 학생에 추가적인 법적 보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PAI의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SERR) 편람 제8장에 정학과 퇴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퇴학에 대한 PAI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를 참조하십시오.

B. 적극적인 행동 조정

자녀가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비스와 다른 보조 장치 및 보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³ 특수교육법은 적절한 경우 IEP 팀이 평가¹⁴, 적극적인 행동 조정 및 지원¹⁵을 포함하는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휴즈 빌(Hughes Bill) 행동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특별 행동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규정은 “기능 분석 평가(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FAA)” 또는 “휴즈 빌 평가”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동 조정 계획을 작성 및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회피적인 행동 조정의 사용을 금지합니다.¹⁶

FAA 결과, 정보 및 추천사항은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조정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계획은 학생의 IEP의 일부가 되며, 비적응적이고 원치 않는 행동을 줄이고 이러한 행동을 허용할 수 있고 보다 적절한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행동 조정 계획은 행동 분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는 사람만이 실행 또는 감독할 수 있습니다.¹⁷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직원들은 긴급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조정 조치는 행동을 억제 또는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오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¹⁸. 또한 긴급 조정 조치는 표적 행동을 변경, 교체 또는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체계적인 행동 조정 계획을 대신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¹⁹

PAI의 SERR 편람 제5장에는 관련 서비스, 행동 조정, 긴급 조정 및 금지된 행동 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제5장의 끝 부분에 있는 행동 조정 플로차트를 참조하십시오.

C. 최소 제한 환경 및 배치

최소 제한 환경(“LRE”)은 장애 자녀가 적절한 최대 한도까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특수교육법의 요건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법은 학군이 각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다른 더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학생들이 정규 학급에서 보조 장치나 보충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²⁰ 이것은 특수교육 학생이 학습을 돕기 위한 다른 서비스를 받아도 정규 학급에서 실시되는 교육에서 진도를 따라갈 수 없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EP 팀은 LRE 요건에 따라 학생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출석했을 학교와 학급이 아닌 다른 배치를 추천하는 이론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에는 학생이 장애 때문에 보조 장치와 보충 서비스를 사용해도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학습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IEP 팀이 특수 주간 학급, 비공립학교, 또는 주거 배치와 같은 심한 행동 문제나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을 격리하기 위한 배치를 추천하기 전에 상담, AB3632 서비스²¹, 일대일 행동 보조원, 행동 조정 계획, 기능 분석 평가 및 다른 관련 서비스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고려, 제공, 개발 및/또는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 60100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대 IEP 팀은 특수교육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학생에게 주거 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학급, 가정 및 기타 커뮤니티 환경에서 행동 전문가와 풀타임 행동 보조원 제공 및/또는 가정 및 기타 커뮤니티 환경에서 학부모 교육 제공과 같은 제한이 적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IEP 팀은 주거 배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 사실과 그러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에는 협력적으로 개발한 교육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혼합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이 조항은 LRE를 더욱 강조 및 지원합니다. 제60100조는 학군이 자녀를 주거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할 것을 추천 또는 의뢰하기 전에 방과후 시간에 일대일 행동 보조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비주거 교육 배치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장애의 성격에 따라서 일대일 교육 보조원의 도움을 아침 일찍(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가기)과 오후(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에 받는 것과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 SERR 편람이나 다른 간행물들의 다른 장들을 참조하기를 원하시면 PAI 웹사이트 www.pai-ca.org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무료 전화 (800) 776-5746으로 저희 사무소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인용 약어

§, §§	조(들)
20 U.S.C.	미국 법령 제20편
34 C.F.R.	연방 규정집 제34편
Cal. Ed. Code	캘리포니아 교육법
5 C.C.R.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후주

- ¹ 20 U.S.C. § 1415(k); Cal. Ed. Code § 48900.5, 48911.5; 또한 일반 정학 규정 참조, Cal. Ed. Code §§ 48900 – 48915.5
- ² Cal. Ed. Code § 48903
- ³ 34 C.F.R. § 300.530(b)
- ⁴ 34 C.F.R. § 300.530(e); 또한 PAI의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 참조
- ⁵ 34 C.F.R. § 300.530(b)
- ⁶ 34 C.F.R. § 300.530(b)
- ⁷ 34 C.F.R. §§ 300.530(b)(2) 및 (d)(4); 및 300.536
- ⁸ 20 U.S.C § 1415 (k)(1)(D); 34 C.F.R. §§ 300.530(b)(2) 및 (d)
- ⁹ 34 C.F.R. § 300.530(e); 또한 PAI의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 참조
- ¹⁰ Cal. Educ. Code § 48903
- ¹¹ 34 C.F.R. § 300.536(a)(2)
- ¹² 34 C.F.R. § 300.530(e); 또한 PAI의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 참조
- ¹³ 20 U.S.C § 1401(26) 및 (33); 34 C.F.R. § 300.34; Cal. Ed. Code §§ 56033.5, 56520 – 56525, 56363; 그리고 5 Cal. Code Regs. §§ 3001 (d), (e) 및 (f), 3052
- ¹⁴ 34 C.F.R. § 300.304(b)(4); Cal. Ed. Code § 56320(f); 또한 평가 절차, 평가 및 재평가 참조 34 C.F.R. §§ 300.303 – 300.305
- ¹⁵ Cal. Ed. Code §§ 56520, 56521 및 56523
- ¹⁶ Cal. Ed. Code §§ 56520 – 56525; 5 Cal. Code Regs. §§ 3001 (d), (e) 및 (f), 그리고 3052
- ¹⁷ Cal. Ed. Code §§ 56520 – 56525; 5 Cal. Code Regs. §§ 3001 (d), (e) 및 (f), 그리고 3052
- ¹⁸ 5 C.C.R. § 3052(i)(3)
- ¹⁹ 5 C.C.R. § 3052(i)(1)
- ²⁰ 20 U.S.C. § 1412(a)(5); 34 C.F.R. § 300.114; Cal. Ed. Code § 56031, 56342
- ²¹ AB3632 규정은 학군이 카운티 정신건강국(“CMH”)과 같은 지역의 비교육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상담, 심리요법 또는 가족요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AB3632에 따라 CMH에 의뢰한 학생에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CMH는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AB3632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기타 관련 서비스와 같은)는 IEP에 기재해야 합니다. AB3632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PAI 편람,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제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Gov. Code §§ 7570 이하; 2 Cal. Code Regs. §§ 60000 이하.